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7월 26일 한지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3.)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 12. 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3. 제안설명의 요지

(한지아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 학생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경윤)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은 현재까지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자의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2024년 6월 현재 256개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

취업제한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대상이 되는 기관의 특성,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는 아동과 관련하여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아동과 상시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할 개연성이 높고, 현재도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선우)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